

# 감사원,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

## 부대입찰·입찰자격사전심사제(PQ) 확대 및 건설공사 의무보험제도 도입

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엔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 ■공직자 책임추궁 강화

중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집행 기관장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고 관리감독자를 공사감독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분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소관공사 전반의 부실시는 관리감독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등 공사집행기관 전체가 책임지는 연대책임체제를 확립하고, 준공된 공사부실에 대하여는 관련 공직자의 문책요구외에 변상판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부실시공업체 제재요구 강화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안전위해·중요부분의 기능상실 등 부실시공과 설계부실로 인한 시설물의 중대하자 유발시에는 면허취소·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부실시공으로 다른 시설물 부분의 상당한 부실을 초래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부분은 철거·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기능저하는 손해보전조치 요구도 병행하므로 부실시공업체는 ①영업활동제한 ②경제적 손실 ③면허취소 ④고발 등으로 업계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작년 3월 이후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적발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할 정도의 부실시공 사례가 3회 이상 나타날 경우엔 면허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 ■특별관리 및 집중감사

건설업체의 수주실적 및 부실시

공 적출사례의 이력을 건설부 자료 등과 연계·전산화하여 관리하고 부 실시공 다발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며 부 실시공 상습건설업체 등은 면허취소 또는 각종 이행보증 억제로 불이익을 주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부실공사사례 다발기관도 자료를 관리·집중감사하고 전반적 공사부실 때는 기관장 등 책임을 추궁한다.

부실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적감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부실공사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진말을 확인감사하며, 이 확인감사는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재시공 시행이 다시 부실할 경우 관련공직자와 관련시공업체에 대한 가중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 ■관련제도 조속개선 추진

입찰자격심사제도(PQ)를 확대, 대상공사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 등을 포함시키고 성실시공업체와 성실기술자를 적극 발굴해 입찰자격 심사시 상당한 이익을 주도록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할 수 있는 벌칙행위에 대해 대부분 가벼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무겁게 처분하도록 하며 지나친 저가입찰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①기술능력 ②시공경험 ③가격 ④재정상태 등을 평가한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토록 한다.

발주기관이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검사절차서 등을 제시하는 제도를, 건설업체는 사업관리절차서와

품질보증계획 및 절차서 등을 제시하는 제도와 함께 공사품질보증·관리체계의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19개 공종의 전문공사 업무영역의 명확화는 물론 면허기준의 합리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입찰서에 하도급할 업체·공사금액·공종 등을 미리 적어내고 낙찰후 기재된 대로 하도급해야 하는 부대입찰제를 더욱 확대하며 위장하도급과 무면허자에 대한 하도급 등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건축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른 설계용역업체에 대해 제재규정이 있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른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벌칙규정을 보완한다.

준공검사와 하자검사는 품질검사 위주로 전환한다. 전문검사기관을 육성 지정하여 검사기능을 부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성실시공업체와 부실시공업체 등을 평가해 우대 또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현재는 수급자 부도가 발생하거나 능력초과에 따른 경제관련 분쟁이 발생할시 보증시공업체의 일방적 희생시공이 강요되고 있어 보증시행공사의 부실다발은 물론 발주기관과 보증시공업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해 부실시공업체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보험가입자격을 상실케 하고 현행 공제조합의 보증제도를 보험제도에 통합하는 방안과 연대보증시공제도의 폐지 등

현재 감사원 감사는 30억원 이상 공사도 20% 정도 밖에 점검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등의 자체감사 기구에 공사분야 감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4% 정도에 불과하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분석한후 ①법령 및 품셈의 개선 ② 노임상승 ③그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과 불합리한 관행과 약속 ④그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지 않는 개선사항 등을 구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철거·재시공토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저하·기능저하 땀 손해보전 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할 방침이다.

을 유도할 방침이다.

■ 자체감사 활성화 촉구

감사원 인력으로는 부실공사 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 기구의 공사분야 전문인력을 보강, 이 기구를 통해 부실공사 중점감사를 실시토록해 감사원은 자체감사 결과를 징구, 검토·평가한다.

■ 부실공사관련 처분요구 기준 운영

[1]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중대한 부실시공과 부실시공 다발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장 문책 등 처분을 요구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연대책임 등 처분을 요구한다.

[2] 관련자에 대한 처분요구 강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극히 위중한 부실시공을 했을 때 관련 공직자는 중징계, 감리업체와 시공업체는 등록취소·고발 등 처분을 각각 요구한다.

[3] 부실설계자에 대한 처분요구 강화

설계부실로 중요부분의 기능상실을 초래했을 때 업무 또는 영업정지를, 시설물 안정의 위해를 초래했을 때 면허취소·고발 등 조치요구한다.

[4] 부실시공부분의 재시공 등 조치강화

부실시공부분은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시공요구시는 시설물의 내구성저하·기능저하에 따른 손해보전 조치요구를 병행한다.

[5] 처분요구기준의 가중·경감

부실시공 다발 등 상습적인 부실시공업체와 공사규모에 비해 부실시공이 많은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적용을 가중하고 성실시공업체는 기준적용을 경감한다.

[6] 공공발주공사 서면감사 강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 공사, 저가입찰공사, 공정 지연 등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한 서면감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감사효율을 높이기 위해 7백75개 기관에서 발주한 2천4백여 개의 공사관련자료와 특별관리가 필요한 건설회사의 공사수주현황을 입력·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공사발주기관들의 연도별 발주현황과 건설회사들의 연도별 공사수주현황, 취약업체들의 연도별 공사수주현황 등을 모두 컴퓨터에 수록해 분석한다.

■ 국민생활 밀접공사 감사강화

보도블럭·뒷골목 포장 등 국민생활 밀접공사는 소규모 공사이거나 민간공사로 감사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공사는 시공여건 불량·영세업자시공 등으로 구조적 부실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부실다발기관·공종에 대하여는 집중 점검하고 관련자 제재요구와 관련제도 개선을 병행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공사 허가기관은 능력, 인력부족으로 품질관리를 건축주에게 일임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부실설계·시공업체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